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구 ○○동 123-4 대 300㎡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분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 3244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173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김○○[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6.25. 선고 97다5288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종중, 등기말소, 취득시효)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3 전 2,397㎡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3 전 2,39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9. 12. 27. 접수 제2247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부동산 중 위 법원 1992. 7.4. 접수 제14859호로 경료한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3 전 2,397㎡에 관하여 1933. 1.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위토를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의 소유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손이 그 후손의 개인 소유인 토지를 특정 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147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신탁해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회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공사 선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급기야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신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탁계약의 이행불능 책임이 수탁회사에 있다고 본 사례

②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 종료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탁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여 신탁에 따른 손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한 취지가 아니라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

③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부담할 자(=신탁자)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수탁회사가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 대상이 된다.(서울지법 1999. 9. 15. 선고 98가합 83710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424 답 1,438㎡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시 ○○면 ○○리 424 답 1,43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3. 12. 접수 제3529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최초 소제기 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참조판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584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대위에 의한)

소외 정상수[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게, 피고 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102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ㄷ, ㄹ, 표시부분 300㎡의 지분 1/2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 표시부분 500㎡의 지분 1/2에 관하여,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3, 12, 14, 15, 16,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ㄱ 표시부분 400㎡의 지분 1/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해 둔 가등기의 효력(원인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12.11. 선고 98다4325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195-1 대 764㎡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6, 27, 26, 24, 2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9㎡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에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가처분채무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이미 경료된 가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킬 의도로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인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22904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의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3] 상속관계표 기재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의 각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 귀속관계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1. 원고에게 강원 ○○군 ○○면 ○○리 산 1 임야 34,026㎡ 중
가. 피고 이일남, 이일근은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조영자는 6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이일순, 이정일, 이일녀, 이일숙, 이정변, 이정남, 이정선은 각 6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7.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부락의 부락민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

부락민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락이 그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로 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부락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은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등기권리증의 소지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③ 부락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락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락민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상의 기재내용, 등기권리증의 소지상황, 부동산의 관리상태,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존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락이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원고에게, 경남 ○○군 ○○읍 ○○리 산 93 임야 47,101㎡와 같은 리 산 107 임야 67,339㎡에 대한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태호, 민지환, 정동일, 정대환은 각 1991. 11.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정순희는 1991. 12.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③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명칭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제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④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총회결의의 효력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특정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서에 소집일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그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종중총회의 소집을 알았다고 보아 그 종원의 참석없이 이루어진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을 긍정한 사례

종중 문장이 특정 종원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연월, 시간과 장소 등은 기재하고 그 일자의 기재를 누락하였지만, 그 종원은 종중의 상당한 수의 종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종중총회 장소도 같은 마을이며 문장이 종중총회의 소집일자를 신문에 공고까지 하였다면, 그 종원은 위 날짜에 종중총회가 소집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소집일 기재 누락만으로는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6.9. 선고 94다423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원고에게, 피고 강상남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상남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25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3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종중규약이 없고 대표자 외에는 별다른 임원도 없으며 시제도 수년간 열리지 않던 상태에서 종중대표자가 종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종중 부동산에 관해 종중의 결의 없이 사정명의인의 자손 중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종중은 규약도 없었고, 대표자 이외에는 별다른 임원도 없었으며 더구나 종중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하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인 시제가 수년째 열리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종중의 대표자가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명의수탁받아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원들 후손 중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종중의 대표자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와 달리 후손들의 개인 재산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이 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2.9. 선고 96다3065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종중)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군 ○○읍 ○○리 산 43 임야 58,958㎡에 관하여 이 소장부 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1958. 12. 11.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7279호로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2006. 7.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16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 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보고서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갑의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이 병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갑의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이 병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가. 피고 정일순, 같은 남필성은 각 27분의 6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정이순, 같은 정삼순, 같은 정사순은 각 2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다. 피고 정오순, 같은 정육순, 같은 정칠순은 각 27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1993. 1. 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종중의 성립 요건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 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428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말소등기, 종친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산 123 임야 42,9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각 불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나) 같은 등기소 1994. 1. 18. 접수 제5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에게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2.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
 중 1/2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1/2 지분의 명의수탁자 갑이 을과 자신의 지분 1/2 중 1/2
 지분(전체의 1/4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 병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의의 취지는 단순히 갑이 을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나아가 갑, 을, 병 3인의 각 지분의 비율을 확인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각자
 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만 권리를 주장하기로 하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갑으로서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1/4
 지분에 관하여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펼한
 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펼한
 후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
 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287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에게 ○○시 ○○구 ○○동 123-2 대 80.4㎡ 및 같은 동 123-3 대 50.3㎡ 중 피고 김○○, 김○○은 각 2/8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은 1/8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은 3/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합유)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2. 7.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 원·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합유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을과 동업계약을 맺고 있는 갑이,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을의 명의로 이전함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갑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을에게 신탁함에 대하여까지 승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사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이 을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갑, 을로 구성된 조합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행위는 조합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1인에 불과한 갑으로서는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처리 중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원들 명의의 합유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계약이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하고, 조합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바, 갑과 을이 각자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그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되 갑은 공사시공과 관계되는 일을 맡고 을은 자금관리와 대외적 업무처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위와 같은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경우, 을은 적어도 자금관리와 대외적 업무처리에 관한 한 갑, 을로 구성된 조합의 업무집행자라고 할 것이고, 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을이 조합의 대외적 업무처리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면 그것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의 권리취득이 되어 특약이 없는 한 공유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중의 1인인 갑으로서도 갑, 을 사이의 조합계약에 기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을이 취득한 공유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495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시 ○○동 123-4 대 100㎡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7, 26, 25, 7, 8, 9, 16, 17, 18, 19, 20,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 (사), (아) 부분 대 50㎡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 . . .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손○○는 위 같은 도면 표시 28, 27, 26, 25, 7, 24, 23, 22, 21, 20,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부분 세멘브룩조 스텔트즙 평가건 가건물주택 건평 50㎡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27, 26, 25, 7, 24, 23, 22, 17, 18, 19, 20,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 (사)부분 대지 5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1. 피고들은 충남 ○○군 ○○면 ○○리 산 59-1 임야 32,928㎡(실제 면적 32,9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13, 114, 115, 116, 1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으로 둘러싸인 ㉠, ㉡, ㉢, ㉣ 부분 27,290㎡와 같은 리 산 57-2 임야 5,256㎡에 관하여,
 가. 원고 윤영섭, 원고 윤영령, 원고 윤영준에게 각 47,628분의 2,016지분에 대한,
 나. 원고 전영자에게 47,628분의 3,024지분에 대한,
 다. 원고 윤일영, 원고 윤이영에게 각 47,628분의 9,072지분에 대한,
 라. 원고 윤삼영, 원고 윤사영, 원고 윤오원에게 각 47,628분의 2,268지분에 대한,
 1992. 10.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금양임야의 의의와 인정범위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의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고 종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의 재산이므로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더라도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고, 혈통을 같이하는 자손들이 조상의 분묘를 설치, 보존하기 위한 임야로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양임야는 반드시 1필지의 임야로 구성될 필요가 없고, 1필지의 임야 중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수필지에 걸쳐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정보(3,000평)의 범위 내에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금양임야의 판단기준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장소, 지형, 방향, 위치, 나무의 나이 및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여 혈통을 같이 하는 자손들이 금양임야로서 보존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서부지원 1993.5.14. 선고 92가합1352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종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김명숙, 같은 정남일에게 각 16분의 3, 같은 정남이, 같은 정난희, 같은 정난숙, 같은 정난화에게 각 16분의 2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199 . . .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㉔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종증)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는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2. 12. 접수 제860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황○○은 별지 제2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6. 26. 접수 제451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주○○은 별지 제2목록 3,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10. 10. 접수 제399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최○○은 별지 제2목록 5, 6,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12. 24. 접수 제14951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마. 피고 한○○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제2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②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그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여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의미하므로,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어 피후견인이 능력자로 복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38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농지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 ○○군 ○○면 ○○리 123-1 전 300㎡(이하 위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최○덕은 각 11분의 5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옥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선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